



제434회국회(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

■ 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12~17514호)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30호)

2026.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5
1.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및 시청자미디어재단·KOBACO 폐지 ...	5
가. 주요 내용	5
나. 검토 의견	17
2. 부칙: 시행일, 설립위원회, 권리·의무·고용 승계 등	23
가. 주요 내용	23
나. 검토 의견	27
3.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47
가. 관계 부처 의견	47
나. 관계 기관/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50

I . 제안경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가. 발 의 자 : 김현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6. 3. 16.

다. 회 부 일 : 2026. 3. 17.

【방송법】

가. 발 의 자 : 김현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6. 3. 16.

다. 회 부 일 : 2026. 3. 1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가. 발 의 자 : 김현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6. 3. 16.

다. 회 부 일 : 2026. 3. 17.

【방송법】

가. 발 의 자 : 최민희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 2026. 3. 17.

다. 회 부 일 : 2026. 3.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현의원안】

2025년 10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방송미디어 진흥과 규제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미디어 관련 사업의 다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에서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방송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수행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2013년 (구)방송통신위원회와 (구)미래창조과학부가 분리될 당시 통신 사후 규제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 규제 및 진흥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도록 분할되었으나, 통신 분야 공공기관 및 협회 대다수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편입되었음.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산하기관 지휘·감독 체계에 혼선이 초래됨은 물론, 온라인 이용자 보호 정책이 파편적으로 추진된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따라서 시청자 권익 증진과 방송미디어 광고 산업 지원이라는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 통합을 통해 공통 지원 부서의 운영을 일원화하고, 여기서 확보된 전문 역량을 신규 미디어 정책 사업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이에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여러 기관에서 분산 수행 중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방송미디어 진흥, 온라인 이용자 보호 및 방송미디어통신 공정 경쟁 시장 조성 업무를 통합 수행함으로써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사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최민희의원안】

2025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고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산되어 있던 방송정책을 통합함에 따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서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진흥 및 규제 업무를 총괄하도록 통합하였으며, OTT 등 새로운 미디어분야까지 정책 영역을 확장했음.

또한, 진흥 업무 통합에 부응하고 1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효과성 높은 진흥 업무(사업, 정책, R&D 지원 등)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과 방송미디어 산업의 발전, 미디어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특화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집행 기관이 필요함.

이에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을 신설하여 방송미디어 분야 정책 수립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국제교류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 분야의 진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및 시청자미디어재단·KOBACO 폐지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미디어 분야의 진흥과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을 설립하려는 것임
- 진흥원의 근거 조항을 김현의원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최민희의원안은 「방송법」에 신설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김현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23조의2(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①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u> <u>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u> <u>③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u> <u>④ 진흥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역센터·사무소·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u> <u>⑤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u>

현행	개정안
	<u>⑥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u> <u>1.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u> <u>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u> <u>3.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u> <u>4.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u> <u>5. 방송미디어광고의 판매대행</u> <u>6.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미디어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u> <u>7. 방송미디어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운영, 광고 관련 조사·연구·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미디어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u> <u>8. 시청점유율 조사·검증·산정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u> <u>9. 방송미디어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남북협력을 포함한다)·해외진출 및 해외홍보 지원</u> <u>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고충의 상담·처리</u> <u>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 및 제23조의5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처리 관련 정책의 지원</u> <u>12.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 및 분석</u> <u>13. 방송미디어통신에 관한 연구지원 및 교육</u> <u>14. 방송미디어통신 윤리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연구</u> <u>15.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시청자와 이용자의 보호</u>

현행	개정안
	<u>및 권익제고 지원</u> <u>16. 방송미디어통신 콘텐츠의 제작·유통·활용 및 수출 지원</u> <u>17.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u> <u>18. 방송미디어 및 이용자 보호 분야 정책 및 제도의 연구·기획</u> <u>19. 방송미디어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동향 및 통계의 조사·분석</u> <u>20.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미디어통신 소외 방지를 위한 사업</u> <u>21. 방송재난 예방 및 재난방송 송출·실시 등을 위한 지원</u> <u>22.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지원</u> <u>23. 시청자 및 이용자와 방송통신 사업자 간 분쟁 조정 지원</u> <u>24. 방송미디어통신에 대한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 을 위한 지원 및 연구</u> <u>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05호로 개정되어 2026년 7월 7일에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한다) 제44조의17에 따른 투명성센터의 운영</u> <u>26.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지원</u> <u>27. 방송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유해정보의 유통방지에 관한 사업</u> <u>28. 방송미디어 산업 육성·발전 및 시장 활성화 지원</u> <u>29. 방송미디어 기업·사업자의 창업·성장 등 지원</u> <u>30. 방송미디어 및 이용자 보호 분야 전문인력 양성</u> <u>31. 방송미디어 및 이용자 보호 기술의 융합·활용</u>

현행	개정안
	<u>에 관한 사업</u> <u>3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진흥원에 위탁한 사업</u> <u>3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u> <u>34.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u> <u>⑦ 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u> <u>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u> <u>2. 제6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u> <u>3.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u> <u>4. 자산운용수익금</u> <u>5. 국가보조금 또는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u> <u>6.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u> <u>⑧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제6항 각 호의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u> <u>⑨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u>⑩ 진흥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u> <u>⑪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u> <u>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방송법」：최민희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97조의2(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 ①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u> <u>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u> <u>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u> <u>1. 방송미디어 분야 정책 수립 및 법·제도 개선 등 지원</u> <u>2. 방송미디어 산업 육성·발전 및 시장 활성화 지원</u> <u>3. 방송미디어 기업·사업자의 창업·성장 등 지원</u> <u>4. 방송미디어 분야 전문인력 양성</u> <u>5. 방송미디어 기술의 융합·활용에 관한 사업</u> <u>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성과 확산 등</u> <u>7. 방송미디어 산업 동향 분석, 통계 작성, 정보 분석 및 서비스 발전 등에 관한 사업</u> <u>8. 방송미디어 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u> <u>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u> <u>④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제3항 각 호의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u> <u>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u>⑥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또한, 개정안은 진흥원 설치에 따라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를 폐지하고자 함.

【「방송법」：김현의원안】

현행	개정안
<u>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u> <u>②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법인으로 한다.</u> <u>③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u> <u>④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u> <u>1.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u> <u>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u> <u>3.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u> <u>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u> <u>5.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u> <u>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u>	<u><삭 제></u>

현 행	개 정 안
<u>받은 사업</u> 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 ⑥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김현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 대행 등 방송광고에 <u>관한 사항과 한</u> 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1조(목적) ----- -----<u>관한</u>----- ----- ----- ----- ----- ----- -----

현행	개정안
한다. 제5조(방송광고의 판매대행) ① (생략)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에 한정하여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제6조(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① (생략) ②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네트워크 지원방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④ (생략) 제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24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	---. 제5조(방송광고의 판매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른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하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라 한다)이-----. 제6조(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은----- -----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은----- ----- ----- -----. ③·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u>제25조(법인격)</u>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u>제26조(사무소 및 등기)</u>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27조(자본금 및 주식)</u>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②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④ 주식은 기명으로 하고 그 종류와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u>제28조(임원 등)</u>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상임이사의 정수는 사장을 포함한 5명으로 한다. ③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한다. ⑤ 감사 및 비상임이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u>제29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u> <u>1. 방송광고의 판매대행</u> <u>2.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u> <u>3.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운영, 광고 관련 조사·연구·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u> <u>4. 시청점유율 조사·검증·산정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u> <u>5.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u>	<삭 제>

현행	개정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 대되는 사업 제30조(자금의 조달 및 회계) 공사는 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제29조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 입금 4. 자산운용수익금 5. 국가보조금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 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3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 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 금에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 비금으로 적립 ② 공사는 공사의 업무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와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u>제32조(비밀누설의 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삭 제></u>
<u>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u>	<u><삭 제></u>
<u>제34조(감독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u> <u>②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u> <u>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	<u><삭 제></u>
<u>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1.·2. (생략) <u>3. 제3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u>	<u>제42조(벌칙) -----</u> <u>-----</u> <u>-----.</u> 1.·2. (현행과 같음) <u><삭 제></u>

나. 검토 의견

- 현행 「방송법」 제90조의2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두고, 미디어 관련 교육·체험·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지원, 각종 방송제작 설비 이용 지원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현행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4장(제24조부터 제34조까지)은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를 두고, 방송광고 판매대행,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시청점유율 조사·검증·산정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난 2025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으로 방송미디어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었음에도 방송미디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여전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로 흩어져있다는 점에서 방송미디어 분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통합적인 기관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 및 지원을 위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¹⁾하려는 취지로 보임.

○ 두 개정안을 조문별로 비교해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두 개정안은 각각 진흥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안 제1항·제2항), 진흥원의 사업 범위를 정하고 있음(김현의원안 제6항 및 최민회의원안 제3항)
- 또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김현의원안 제8항 및 최민회의원안 제4항),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김현의원안 제9항 및 최민회의원안 제5항),
그 밖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김현의원안 제12항 및 최민회의원안 제6항).
- 김현의원안은 최민회의원안과 달리 추가적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국내외 지역센터·사무소·지사 또는 주재원을 두도록 하고(제3항·제4항), 진흥원 사업 경비의 재원을 규정하며(제7항), 진흥원의 지원을 받으려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제10항), 진흥원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제11항).

1)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존속시킨 채 진흥원을 별도로 설립하려는 최민회의원안과 달리, 김현의원안은 종전 기관을 폐지하고 신설되는 진흥원에 흡수시키고 있음.

- 개정안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방송미디어 분야 공공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역할과 두 공공기관 통합의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개 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규제 업무와 진흥 업무를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및 권익보호 지원뿐만 아니라 방송시장 불공정행위조사 지원,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포함한 인터넷환경 신뢰도 조성 등을 수행 중이며, 방송광고 판매대행(미디어랩)을 주 업무로 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또한 시청점유율 조사, 국내 OTT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 미디어·콘텐츠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함.
-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통폐합하고 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한 취지가 인정된다고 보임.
 - 여러 기관이 각각 운용하던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와 인력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경상비 감축, 운영 및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사업의 중복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방송미디어 진흥, 이용자 보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의 업무의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종전 여러 기관에 분산된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고, 업무 지휘·감독 체계를 단순화하여

혼선을 줄이고, 방송 진흥과 유료방송 업무를 이관받은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 추진 동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설립하려는 진흥원의 사업 범위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김현의원안에 정하고 있는 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따르면, 진흥원은 2026년 기준 총 12개 기관 및 협회를 통틀어 약 1,128억 5,000만원²⁾의 예산과 기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이관받아 수행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제외하더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등의 사업을 다수 이관받을 것으로 보임.
- 방송미디어, 통신의 이용자 복지를 증진하고,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규제와 진흥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여야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립·운영 목적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업을 방미통위 소관 기관인 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예산이나 기금 등 정부 재원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임.
- 한편, 김현의원안은 올해 2월 개정되어 7월에 시행 예정인 「정

2) 2025년 기준 1,398억 5,000만원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7에 따른 투명성센터의 운영을 진흥원의 사업 범위로 정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7³⁾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사실확인 단체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임.
- 공공기관인 진흥원이 투명성센터를 운영하는 형태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여금 투명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제44조의16에 따른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이하 “투명성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원
2. 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4.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①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는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이하 이 조에서 “허위정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자율적인 정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와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체결한 협약은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실확인 단체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등에 관하여 사실확인된 정보, 사실확인 후 취한 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제1항의 허위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정책에 따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실확인의 범위, 보고서의 공개 방법,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의 공표 방법, 협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또한, 투명성센터는 올해 7월부터 설립·운영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27년 1월에 설립 예정인 진흥원에 설치할 경우 투명성센터의 공백이 6개월 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마지막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업무 이관과 관련하여, 김현 의원안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그대로 가져오는 대신 ‘방송광고’를 ‘방송미디어광고’로 수정하였음.
- 그러나 방송미디어광고가 방송광고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방송광고와 구별되는 새로운 범주의 광고인지 등 ‘**방송미디어광고**’의 개념이 불분명한바, 진흥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광고산업의 육성과 진흥은 「정부조직법」 5)에 따라 문체부 소관 업무로서, 기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담당하던 ‘방송광고’ 판매대행으로 진흥원 업무를 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 이를 종합하면, 개정안에 대하여는 기관을 통폐합하여 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의 타당성, 진흥원의 사업 범위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5) 「정부조직법」

제39조(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부칙: 시행일, 설립위원회, 권리·의무·고용 승계 등

가. 주요 내용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과 진흥원 설립 준비, 권리·의무 승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은 시행일, 진흥원 설립 준비 권리·의무의 승계, 해산 및 청산의 특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개정안은 시행일만을 정하고 있음.
- 특히, 김현의원안은 공공기관 통폐합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폐지하고 진흥원에 흡수하는 반면, 최민희의원안은 기존 기관들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음.

【김현의원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의 설립 준비)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해산 및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라 한다)	
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장과 설립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를 진흥원의 최초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보며, 최초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시청자미디어재단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진흥원은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재단등”이라 한다)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등의 명의를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진흥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진흥원 설립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등이 한 행위 또는 재단등에 대하여 한 행위는 진흥원이 한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⑤ 재단등의 직원은 설립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직원이 된다.

제4조(재단등의 해산 및 청산의 특례)

①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

①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등의 재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6.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
7.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8. 한국가상융합디지털산업협회
9.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10.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② 제1항의 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재산·권리·의무 및 소속 직원을 진흥원으로 재편성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등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계획(이하 “재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등의 이사회 등 정관에 따른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쳐 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진흥원이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등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직원 중 재편계획에 포함된 직원은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진흥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진흥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각각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등의 명의를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⑦ 제3항에 따른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에 드는 비용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⑧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등이 행한 행위는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6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9호 중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한다.

②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2항 중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는”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을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은”으로 한다.

③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는”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을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은”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민희의원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 의견

□ 부칙의 취지

- 김현의원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이하 “부칙”이라 함)은 기관 폐지 및 신규 설립에 필요한 특례, 경과 조치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흥원의 연착륙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 부칙은 전반적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정 당시의 부칙 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설립과 관련된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보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정법률안 (법률 제9708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대표발의)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진흥원의 설립 준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해산 및 산업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진흥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 「전자거래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의 설립 준비)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해산 및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라 한다) 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정 법률안 (법률 제9708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현의원 대표발의)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산업진흥원의 감사를 제외한 최초의 임원은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이 임명하고, 산업진흥원의 최초의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산업진흥원의 최초의 임원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④ 설립위원회는 산업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산업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산업진흥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산업진흥원의 설립에 드는 비용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이라 한다)이 분담한다. 제3조(산업진흥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은 해당	률」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장과 설립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를 진흥원의 최초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보며, 최초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시청자미디어재단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권리·의무의 승계 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정법률안 (법률 제9708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대표발의)
법률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산업진흥원이 포괄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진흥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의 명칭은 산업진흥원의 명칭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이 한 행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에 대하여 한 행위는 산업진흥원이 한 행위 또는 산업진흥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의 직원은 설립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진흥원의 직원이 된다. 제4조(공공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산업진흥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① 진흥원은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재단등”이라 한다)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진흥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진흥원 설립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등이 한 행위 또는 재단등에 대하여 한 행위는 진흥원이 한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⑤ 재단등의 직원은 설립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직원이 된다. 제6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2조에 대한 검토

- 부칙 제2조에 따른 설립위원회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첫째, 종전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 당시의 설립위원회 관련 선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과 KOBACO 설치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부칙은 아래와 같음.

< 기관 설립위원회 설치 관련 부칙 >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現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
법률 제12677호 부칙 제2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회 위원장은 설립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설립위원회 업무 보좌를 위하	법률 제11373호 부칙 제3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공사의 설립 및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의 자산 및 업무 이관, 직원 승계 등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u>방송 또는 광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하며,</u> 설립위원회 위원장은 설립위원회 위원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現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
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설립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은 후 <u>지체 없이</u>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u>설립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경비</u>는 <u>국가</u>가 부담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등기 후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회는 해산되고 설립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간에 체결된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등 시청자 지원 <u>사업 관련 위탁 협약은</u> <u>해약된 것으로 본다</u>. 이 경우 협약 사업비 잔액과 그 협약에 따라 형성된 자산 및 인력 등에 대한 권리·의무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승계한다.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설립위원회의 업무 보좌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은 후 <u>이 법 시행일까지</u>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u>해산비용 및 공사의 설립비용</u>은 <u>공사</u>가 부담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 후 공사의 사장에게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회는 해산되고 설립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되는 공사의 임원 선임을 위한 <u>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u>.

- KOBACO 설립위원회는 위원으로 방송 또는 광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참여시킬 것을 조건으로 두고 있
었으나, 개정안 부칙에서는 설립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또한, 설립위원회 설치의 경비 부담 주체 또는 KOBACO 설립
비용 부담 주체를 규정하고 있던 당시 부칙과 달리, 개정안 부
칙에는 설립위원회 운영 또는 진흥원 설치 경비를 부담할 주체
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따라서, 종전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설립위원회 위원의 자격요
건을 규정하거나, 설립위원회 설치·운영 경비를 국가가 부담
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둘째, 부칙 제2조에 따른 설립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간주
하려는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
함) 제29조⁶⁾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①제25조·제26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
고,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관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임원추천위원회는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과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그 공
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그 준정부기관의 주무기관 소
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다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를 2분
의 1로 할 수 있다.

⑤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하여 기관 내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라 함)를 둬서 기관의 자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 또한, 제29조제3항은 임원 추천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임추위 위원으로 공무원이나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포함될 수 없도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설립위원회의 활동 중 임원 추천 시에는 「공공기관법」 제29조제3항과 같이 재단 및 공사의 임직원과 공무원을 배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러한 특례를 두었던 입법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해당 인사 제외 시 소수⁷⁾의 설립위원만이 임원 추천 절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자질과 적격성을 심도 있게 검증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법으로 이를 규정하기보다는 설립위원회의 임원 추천 시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기관법」 제29조의 취지를 고려한 별도 장치를 설립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2026년 4월 기준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

⑥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위원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⑦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7) 「공공기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임추위 위원은 5~15명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함

사는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임원을 추천할 때 임추위를 구성할 의무는 없으나, 두 기관을 통합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은 정원, 자산규모 등의 측면에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여 임추위 구성 의무를 지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부칙 제3조에 대한 검토

- 부칙 제3조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직원의 고용 승계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기관이 완전히 폐지되어 진흥원에 통합됨에도 그 직원의 고용 승계가 설립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NIPA 설립 당시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안」 부칙 3조 제5항과 동일한 형태임.
- 첫째, 직원의 고용 승계의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 법률에 전혀 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 부분이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에 반할 소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직원의 고용 승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을 고려할 때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로써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헌법재판소는 법률유보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있어 기본적으로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⁸⁾

8) 1999.5.27.선고 98헌바70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 개정안에 따르면 수범자인 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직원은 자신의 고용 승계 여부를 법률만으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며 설립위원회의 자의적 결정에 따르는데, 기본권 제한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에 부합하는 입법 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공사 또는 공단의 조직변경이나, 기관 설립 시 고용 승계 방식과 관련하여 중전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였던 입법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지방공기업법」 제80조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¹⁰⁾,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법률」 제10조¹¹⁾, 「한국토지

9) 「지방공기업법」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① 공사와 공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조직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한 공사가 공단으로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의회의 의결 전에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④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의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조직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사 또는 공단이 제2항에 따른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3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중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에 중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고용승계 등) ① 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청 직원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철도청 직원중 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직원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조건 및 퇴직급여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11)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법률」

주택공사법」 부칙¹²⁾ 등은 기관 설립·통폐합에 따라 종전 직원의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셋째, 고용 승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대법원에 따르면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¹³⁾

- 또한 다른 판례¹⁴⁾에서도 어떤 사업이 다른 경영주체에 양도되면서 물적 시설을 이전함과 아울러 그 양도되는 사업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경영주체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하며, 이러한 법리는 사업을 양도한 경영주체가 국가인 경우라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음.

○ 넷째, 설립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이 승계되지 아니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는 없는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의 분할을 지원하여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함으로써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기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게 하여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고용계약의 승계) 신설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업을 승계한 경우 그에 종사하는 직원과 한국전력공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는 신설회사가 이를 승계한다.

1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제9706호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대한주택공사법과 한국토지공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조치) 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13)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1659 판결

14)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23834 판결

진 검토가 필요함.

- 최소한 설립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15)에 따른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같은 법 제24조16)에 따른 노력의무·신고의무 등을 다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이를 종합하면, 시청자미디어재단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직원의 고용 승계 방식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설립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할 소지는 없는지, 고용 포괄 승계 원칙을 천명한 대법원 판례 및 유사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별히 포괄 승계를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관계 법령에 따른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는 아니할지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15)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16)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조에 대한 검토

- 부칙 제4조는 특례를 통해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진흥원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그런데, 과거 2011년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조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부칙을 통해 조세특례의 근거를 두었던 입법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보유한 프레스센터, 방송회관, 연수원 등 토지와 건물이 신설 기관으로 양도되면서 100억 원 이상의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¹⁷⁾가 감면되었을 것으로 추산되며, 지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이번 통폐합 과정에서는 2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73호 (2012.2.22. 시행)
부칙 제10조(공사에 대한 정부의 출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해산 및 청산, 공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기관 통폐합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토지, 건물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조세 납부로 인한 기관 경영상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과거 입법례와 같이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특례의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17)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 부칙 제5조에 대한 검토

- 부칙 제5조에 따른 민간 협회의 사업 재편 계획 수립 의무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비법정 협회의 사업 재편을 의무화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칙 제5조는 다음의 협회에게 사업 재편 계획을 수립하여 방미통위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재편 계획에는 해당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재산·권리·의무와 직원의 고용관계를 재편성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설립 근거 법률	협회명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전파법」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없음	한국가상융합디지털산업협회(MDIA)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한국통신사업자연협회(KTOA)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2개 협회는 법률에 따라 업무를 직접 또는 위임·위탁받아 수행¹⁸⁾하고 있고, 협

1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⑤ 진흥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① 정보통신의 표준 제정, 보급 및 정보통신 기술 지원 등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

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조 또는 출연¹⁹⁾받고 있음.

- 「전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한국전파진흥협회 또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직접 또는 위탁받아 수행²⁰⁾하고 있음.

통신기술협회(이하 “기술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4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1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 제32조의5(부정방지시스템 구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제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② 진흥협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 관련 교육훈련 등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2. 정보통신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활동
3. 정보통신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4. 국내외 정보통신 관련 기관과의 교류활동
5. 정보통신서비스 등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편익활동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1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④ 정부는 진흥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4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③ 정부는 정보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협회에 출연할 수 있다.

20) 「전파법」

- 제66조의2(한국전파진흥협회)**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새로운 전파이용 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촉진
 2.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방송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3.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업
 4. 전파이용 및 방송 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유관기관·단체가 위탁한 사업
- ④ 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8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 제7조의2, 제18조, 제2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의2제1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4항·제5항 및 제58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9조 및 제7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협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파법 시행령」

- 제88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 간의 협력활동
2. 전파의 이용확산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연구·조사·홍보 및 발간사업

○ 그러나, ‘한국가상융합디지털산업협회’,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협회’는 메타버스 이용자보호 실태조사, 디지털성범죄물 비교식별기술 체계구축, 위치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 등의 예산사업을 우연히 현 시점에 계약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뿐, 법에 따라 해당 업무를 고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회는 아님.

○ 그럼에도 개정안 논의 당시 진흥원의 업무로 편입시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비법정 협회의 조직과 인력을 법률로써 진흥원 조직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둘째**, 민간 기관이나 협회·단체의 직원을 공공기관인 진흥원 직원으로 당연히 고용 승계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2의2.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파수 또는 기술방식 등에 관한 수요조사 및 분석

나. 주파수 또는 새로운 기술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 사업

2의3. 전파방송산업의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전파방송기술의 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업

나. 전파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통신기자재, 방송장비 등의 유통 지원에 관한 사업

다. 전파방송기술 및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3. 전파 관련 산업의 실태조사

3의2. 방송통신기자재의 실태조사

4. 전파이용 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전파에 관한 기술정보의 수집·조사·분석 및 제공

6.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6의2. 전파이용 및 방송 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7.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과 그 밖에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 업무를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위탁한다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민간 협회는 공적 책무보다는 회원사의 권익 보호,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설립되는 이익단체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과는 추구하는 인사상 가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 공공기관에 관한 재정경제부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다양한 근로형태 등을 통해 새로운 일차리를 창출하여야 하고,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지역인재·고졸자·청년 등에 대한 채용기회를 확대하여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함.²¹⁾

○ 공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공기관은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청렴성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민간 협회 직원의 고용관계를 당연히 승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임.

- 예를 들어, 「공공기관법」 제37조²²⁾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직원은 영리 목적의 겸직이 제한되나, 민간 협회에서

21)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재정경제부지침)

제3조(인사 운영의 원칙) ①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선임·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일자리 창출 노력 및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①공공기관은 다양한 근로형태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경력단절여성 포함)·지역인재·고졸자·청년 등에 대한 채용기회를 확대하여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인력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는 협회 정관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영리 목적의
점직이 허용되고 있을 것임에도 해당 직원을 공공기관 직원으
로 편입시키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
서 고용관계를 일률적으로 승계하기는 어렵다고 보임.

- 다만, 재편계획에 따라 민간 협회 직원이 진흥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보는바, 재편계획에서 「공공기관법」의 취지
를 충분히 고려하여 고용 승계 조건 등을 규정할 경우 고용승
계 방식에 대한 입법적 한계를 보완할 여지도 있어 보임.

○ 셋째, 민간 기관이나 협회·단체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를 공
공기관으로 이관시킨 유사 입법례도 찾아보기 어려움.

○ 법률 개정에 의해 기관의 권리·의무가 타 기관으로 승계된 유사
입법례²³⁾는 있으나, 당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9369

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9369호 부칙

제3조(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준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
에 다음 각 호의 기관의 해산, 부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재편
성과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기술
개발지원기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종전의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 종전의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재단
3. 부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개정된 종전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
4. 부칙 제8조제4항에 따라 개정된 종전의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제6조(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권리·의무 승계 등) ①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수행
하는 연구개발사업 등의 재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② 제1항의 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이와 관련된 재산·권리·의무 및 소속 직원을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으
로 각각 재편성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계획(이하 “재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재산과 권리·의무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이사회

호는 법정기관이자 공공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청정생산지원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법정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재산·권리·의무·고용관계를 재편성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개정안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넷째, 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협회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협회가 명확히 하나로 한정되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음.
- 법률상 근거 없이 설립되어 운영 중인 ‘비(非)법정 협회·단체’의 재산·권리·의무·고용관계를 법률로써 재편성할 경우 ①해당 협회·단체와 동일한 명칭의 협회·단체가 다수 존재하여 특정되지 않을 수 있고, ②목표로 하는 협회·단체가 법 시행 전 명칭을 변경하여 개정안 시행 당시 해당 협회·단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단체의 명칭을 법률에 규정하는 방식은 한계가 명백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의 의결을 거쳐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이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에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던 직원 중 재편계획에 포함된 직원은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각각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명칭은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의 명의로 본다.

⑦ (생략)

⑧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이 행한 행위는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 이를 종합하면, 부칙 중 협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단순히
현 시점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협회라는 이유만으로 규율
하는 것의 타당성, 민간 협회와 공공기관의 차이점, 유사 입법례
가 찾기 어렵다는 점, 비법정 협·단체를 법률에 규정하는 방식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3.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가. 관계 부처 의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민희의원안과 관련하여 방송미디어 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련 국정과제 이행 동력 강화 측면에서 진흥원 설립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므로 관련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김현의원안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김현의원안과 관련하여는, 방송진흥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이용자보호·공정경쟁 업무의 시너지 제고,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중장기 기획기능 강화 측면에서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다만, ①신설 기관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설립 준비기간 확보가 필요하며, ②기관의 성격·전문성이나 사업 수행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흥원의 사업범위 및 이관받을 대상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③통폐합 대상 기관의 고용승계 관련 불안 해소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며, ④부처 간 협력 및 소통 절차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하다는 입장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미통위 소관 업무의 체계화를 위한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개정안이 과기정통부 소관 사항 및

과기정통부 소관 기관의 사업·재산·권리 변동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설립위원회 위원에 대한 과기정통부장관의 추천권을 추가하고, 사업 재편 계획 수립 시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에 따른 공공기관 신설 취지에 공감하나, 법률과 행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제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맞추어 기관의 명칭에서 ‘미디어’를 삭제해 ‘한국방송통신진흥원’으로 수정하고, 업무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특히, 진흥원에 통합하는 기관의 주 업무는 방송통신, 전파, 시청자·이용자 보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으로 미디어(신문, 잡지, 출판 등) 산업 진흥이나 콘텐츠 산업 진흥과 연관성이 없으므로 방송콘텐츠/광고산업 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임.

- **국무조정실**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없으므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연구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것은 해당 법률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임.

- 특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내 플랫폼정책그룹, 미디어정책연구실, 국제협력센터는 연구원의 3대 미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요 부서로, 해당 부서 이관 시 ICT 산업의 핵심인 플랫폼·

미디어에 대한 국책 연구가 크게 약화되고 싱크탱크로서 글로벌 아젠다 주도 등에 제약이 생길 우려를 표시하였음.

-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모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존치한 채 진흥원을 설립하는 최민희의원안은 기능과 역할이 중복된다는 점과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으나, 해당 기관 등을 폐지하고 통합하여 진흥원을 설치하는 김현의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나. 관계 기관/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여러 기능을 단일 기관에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은 기능 정합성과 시너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임.
-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설립 목적과 핵심 기능이 상이하여 기관 간 사업 연계성을 가지고 시너지 창출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으므로, 기관을 단순히 통합할 경우 기능 충돌과 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발기금으로 대국민 미디어교육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 공공기관인데 반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수익형 공기업으로 기관의 재원 구조가 상이한 만큼, 이를 동일한 체계로 운영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만성적 적자가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전가될 우려가 있음.
- 광고판매대행을 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광고 모니터링 등 권익 보호를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을 결합할 경우 광고에 대한 이해 상충이 발생하고,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개정안 취지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나, ①사업 수행 재원 마련 근거 확대, ②자회사 설립 근거 마련, ③임원 선임 절차 명확화, ④포괄적 고용승계의 보

장, ⑤기관 해산·청산 관련 승계 재산의 출연관계 명확화 등 개정안에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팸대응, 본인확인 및 연계정보에 관한 업무는 침해사고대응과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현재와 같이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관성 및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임.

- 따라서 부칙 제5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대상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본 기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²⁴⁾에 근거하여 지능정보사회 윤리 교육 등이 반영되어 있고, 지능정보사회 윤리 확립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는 만큼 방송미디어통신 윤리 관련 업무를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것은 법체계상 중복된다는 입장임.

- 따라서 부칙 제5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대상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구원 조직을 이관하여 통합 기관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임.

2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③ 지능정보사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7.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과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연구

- 본 기관은 중장기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정책의 기획·집행·평가 등 사업 집행을 주 목적으로 하는 진흥기관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기능이 상이한 두 조직을 통합하는 것은 기능적 정합성뿐만 아니라 정책 운영의 구조적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임.
- 또한, 연구원의 일부 조직이 개별 부처의 산하 기관으로 편입될 경우,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분석 기능이 구조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심의 출연연 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본 협회는 회원사 기반의 민간 법정 단체로서 공공기관과 설립 목적 및 운영 방식이 상이하고, 공공기관 체계에서 이용자보호, 공정경쟁 등 민간 자율 규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산업 활력 저하 및 현장 중심의 신속 대응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일 공공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신설하려는 입법 취지를 존중하나, ①본 협회는 정보통신 표준화와 표준 적합성 시험 인증을 주로 수행하는 민간 단체로서 진흥원의 설립취지와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고, ②회원사 분담금과 시험인증 수수료 등 자체수입의 비중이 약 68%를 차지하

는 민간단체인 본 협회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재산·권리·의무·고용 등에 변동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는 현재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사업과 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본 협회의 정부 보조사업이 진흥원으로 이관될 경우 협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임.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①통신사업자의 권익증진 및 통신 환경 변화 대응을 주 목적으로 하는 KTOA와 진흥원은 설립 취지와 수행 업무 측면에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고, ② KTOA는 민법에 의해 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민간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를 공공기관의 범주에 넣어 재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③민간 조직의 인적 자원을 통합하는 것은 ‘영업양도’ 법리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근로자가 고용 승계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는 입장임.

- 따라서 부칙 제5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대상에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그 밖에 부칙 제5조에 열거된 기관 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한국가상융합디지털산**

업협회(MDIA)는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진흥원 사업범위 중 방송광고 지원 사업 대상에 지역·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 이외에 지역채널을 운영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는 진흥원 추진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권한의 과도한 집중 등이 우려되며, 중소PP와 중소CP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 방송·OTT 등 미디어 분야 진흥 업무 추진 시 콘텐츠진흥원과 업무·기능이 중복되어 행정효율성 저하 및 방송영상산업의 전략적 성장 지원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 한국광고총연합회는 광고산업이 독립적 콘텐츠 산업임에도 방송미디어광고 진흥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책 실효성이 저하될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26